

동반성장론 중요내용 설명서(협력기업용)

1. 상품개요

• 상품의 정의

- 동반성장론은 기존에 1차협력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 진일보하여 구매기업의 신용공여 범위를 4차협력기업까지 확대한 대출상품으로써,
- 구매기업이 채권대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협력기업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환청구권없는 방식(Without Recourse)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입니다.

• 상품명

- 동반성장론(일반) : 1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 동반성장론(협력) : 2차 이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2. 상품흐름

• 채권의 발행

- 구매기업은 1차 협력기업에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내에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원청채권)을 발행

- 1-3차 협력기업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을 근거로 받은 채권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만기가 도래하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며, 상생매출채권 최장 만기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1. 1차 협력기업 : 받은 채권금액에서 이미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금액 및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구매기업과 은행이 약정한 상생매출채권발행가능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최저 1백만원 이상으로 채권발행 가능. 다만, 원청채권 결제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2. 2~3차 협력기업 : 받은 채권금액에서 이미 발행한 상생매출채권금액 및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받은 채권발행일+1은행영업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최저 1백만원 이상으로 채권발행 가능. 다만, 원청채권 결제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3. 1차 협력기업의 상생매출채권 발행은, 원청채권의 양도계약을 포함하는 동반성장론(일반)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을 추가로 체결한 후 가능

• 대출의 실행

- 1차 협력기업 : 구매기업과 은행이 협약한 대출실행가능일부터 채권만기일 1은행영업일전까지 분할하여 대출실행 가능

- 2~4차 협력기업 : 채권발행일+3은행영업일부터 채권만기일 1은행영업일전까지 분할하여 대출실행 가능. 다만, 원청채권의 결제일당일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을 결제하여 결제대금이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이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결제 및 대출금의 상환

- 구매기업이 원청채권 만기일에 해당 원청채권을 근거로 실행된 모든 대출금 및 채권대금 결제
 - 원청채권 결제 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고 대출도 실행되지 않은 하위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 구매기업의 원청채권 결제로 2차이하 하위협력기업이 실행한 대출이 조기 상환될 경우 환출 이자는 각각의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게 지급
 - ※ 4차 대출상환 → 3차에게, 3차 대출상환→2차에게, 2차 대출상환→1차에게 환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임.
 - 원청채권 만기결제 후 상생매출채권 만기일 도래 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채권대금 결제
 - 원청채권 만기결제 후 2~4차협력기업이 대출실행 시 익영업일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고 환출 이자는 각각의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게 지급
- ※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 산하 재단
2. 대출을 받지 않고 만기결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대금수령이 가능하며, 구매기업의 원청채권 미결제로 인하여 본인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이 미결제 될 경우 해당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결제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3. 동반성장론(협력)대출은 협력기업에 의한 개별적인 중도상환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이율

-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산정된 대출금리를 4차협력기업까지 적용합니다.

4. 수수료

동반성장론 이용에 따라 2~4차 협력기업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MP수수료
 - 동반성장론(협력)대출 취급 시 마다 대출취급 금액에서 MP수수료를 차감하여 납부 합니다.
 - B2B이용수수료
 - 상생매출채권이 전액 만기결제되는 경우에 한해 만기입금 금액에서 차감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며, 일부라도 대출을 실행하였거나 하위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MP수수료율은 협력기업과 MP사와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며, B2B이용수수료는 은행과 MP사의 약정에 의해 MP사별로 달리 정해지므로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MP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_____지점 Tel. - -
 담당자 :